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윤덕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현황 등 자료의 요구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164호, 2025.12.2. 공포, 2026.4.3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,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화(안 제9조제2항)

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에 맞추어 규정을 명확히 함.

나. 건축물 분양정보 종합관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 (안 제11조의2)

- 1) 분양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부장관등이 허가권자,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.
- 2)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, 건축

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 구축·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
개발·기술지원,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근거를 신설함.

3)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
규정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0. 00. ~ 2026. 00. 00.) 결과, 특기할

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”를 “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”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등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,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의 내용 및 신고 자료
2. 법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 수리 정보
3. 법 제6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현황
4.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수리한 건축물의 사용승인(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) 정보
5. 그 밖에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

②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(이하 “건축물

분양정보관리체계”라 한다)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2.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
3.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

④ 법 제8조의2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분양계약서) ① (생 략) ② 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 양사업자는 <u>분양계약 등을 체결</u> <u>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</u> 는 수의계약(隨意契約)으로 분 양할 수 있다.	제9조(분양계약서)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분양받을 자를 선정</u> <u>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</u> <u>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</u> <u>있는 경우에는</u>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제11조의2(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 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등은 <u>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</u> <u>권자,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</u> <u>·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</u> <u>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</u> <u>있다.</u> 1. <u>법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의</u> <u>내용 및 신고 자료</u> 2. <u>법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 수</u> <u>리 정보</u> 3. <u>법 제6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</u> <u>결 현황</u> 4. <u>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</u> <u>수리한 건축물의 사용승인(「건</u> <u>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</u>

<신 설>

<신 설>

을 말한다) 정보

5. 그 밖에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

②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(이하 “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”라 한다)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분양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
2.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

3.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

<신 설>

④ 법 제8조의2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